제3009호	화순군공보	발 행 일 : 2021년 5월 6일 발 행 인 : **화 순 군 수** 발 행 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1-58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
화순군 고시 제2021-60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 4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753호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
화순군 공고 제2021-757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 답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5
화순군 공고 제2021-776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16
화순군 공고 제2021-777호	분묘개장공고(1차) ····· 17
화순군 공고 제2021-778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 4월 반송분) ····· 18
화순군 공고 제2021-77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9
화순군 공고 제2021-782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사전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20
화순군 공고 제2021-78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3
화순군 공고 제2021-788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화순군 공고 제2021-793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화순군 공고 제2021-794호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0
화순군 공고 제2021-795호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1-20호선)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47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람									

화순군 고시 제2021 - 58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1. 05. 06.

화 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302-5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1-2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20
   ○ 성 명 : 화순군수 / ㈜씨에스건설 대표이사 김선
4. 면적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m)	폭원(m)	면적(㎡)	비고
소로 1-20	204	10	(당초) 2,038	
			(변경) 2,103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등 변경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8. 관련도서 : 게재생략(화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당 초 >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1	화순읍 교리	302-5	대	124	25		화순군			
2	화순읍 교리	364-2	도	53	53		건설부			
3	화순읍 교리	70-11	대	15	1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4	화순읍 교리	70-12	답	74	7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5	화순읍 교리	70-7	답	141	13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6	화순읍 교리	358-2	구	3,186	346		농수산부			
7	화순읍 교리	302-6	대	16	1		화순군			
8	화순읍 교리	307-2	답	2,289	18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게재생략	
9	화순읍 교리	309	답	1,506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게재생략	
10	화순읍 교리	70	답	682	7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게재생략	
11	화순읍 교리	70-6	도	794	742		화순군			
12	화순읍 교리	358-9	구	21	18		농수산부			
13	화순읍 교리	76-1	도	240	61		화순군			
14	화순읍 교리	78-1	구	67	67		화순군			
15	화순읍 교리	78-3	구	75	24		농림수산부			
16	화순읍 교리	78-4	도	51	51		화순군			
17	화순읍 교리	79	대	1,877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18	화순읍 교리	70-10	대	156	15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19	화순읍 교리	358-6	대	200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공간주택		게재생략	

< 변 경 >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1	화순읍 교리	302-5	대	124	25	화순군				
2	화순읍 교리	364-2	도	53	53	기획재정부				
3	화순읍 교리	70-11	대	15	1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4	화순읍 교리	70-12	답	74	7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5	화순읍 교리	70-7	답	141	13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6	화순읍 교리	358-19	구	355	355	기획재정부				
7	화순읍 교리	302-6	대	16	1	화순군				
8	화순읍 교리	307-2	답	2,289	18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형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게재생략	
9	화순읍 교리	309	답	1,506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형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게재생략	
10	화순읍 교리	70-10	대	156	15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11	화순읍 교리	70-13	답	94	62	화순군				
12	화순읍 교리	70-6	도	794	742	화순군				
13	화순읍 교리	358-9	구	21	21	기획재정부				
14	화순읍 교리	76-1	도	240	61	화순군				
15	화순읍 교리	78-1	구	67	67	화순군				
16	화순읍 교리	78-4	도	355	83	화순군				
17	화순읍 교리	78-7	구	24	24	기획재정부				
18	화순읍 교리	79	대	1,877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19	화순읍 교리	358-6	대	200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6-3	주식회사 공간주택		게재생략	
20	화순읍 교리	358-20	구	29	29	기획재정부				

화순군 고시 제2021-60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4.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1006 외 22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14건,	폐지 9건)		붙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화순군 공고 제2021 - 753호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3조)

-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함.

나. 교육의 위탁(안 제4조)

- 시행령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 진흥 목적의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토록 함.

다.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인원, 교육일시·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교육실시 방법(안 제6조)

- 교육은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방식의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게 함.
- 교육은 반기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사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통지서 송부 및 관리 결과보고(안 제7조 ~ 제9조)

-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 송부
- 교육이수자는 명부로 관리하되, 수탁자는 불참자를 군수에게 통지하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내 결과를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6.(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amma1202@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3) 팩스 : 061-379-360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1-379-3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붙 임 **조례안**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순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

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만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화순군 공고 제2021 - 757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답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이 있었고 그에 따른 답변을 송부했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9.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인(붙임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1. 4. 29. ~ 2021. 5. 13. [14일간]
3. 이 의 제 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당사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의제기 기간(재판 판결 시까지)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은 상실합니다.
4. 이의제기 방법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아래 방법으로 이의제기 신청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답변 반송이력 1부. 끝.

화순군 공고 제2021 - 776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3.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 · 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5. 3. ~ 2021. 5. 28.(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화순군 공고 제 2021-777호

분묘개장공고 (1차)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454-3 (무연분묘 1기)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산11-9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사업부지 내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4. **개장장소** :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번지 (학천사 추모관)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6.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6. 13. (40일)
7. **신고 및 문의처**
   - 화순군청 건설과 (061-379-3752)
   - 이양면사무소(061-379-5050), 청풍면사무소(061-379-5040)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 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1. 5. 3.

화 순 군 수

화순군 공고 제2021 - 778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5. 03.

화 순 군 수

1. 공 고 내 용 :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시분)부과 반송분(2월) 공고
2. 공 고 기 한 : 2021.05.03.~2021.05.28.(25일)
3. 공 고 대 상 : 2021.04.01.~2021.04.30.반송분(4월) / 내역 별첨
4. 문 의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5,3786,3788)
5. 기타 안내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8)에서 고지서를 발급(가상계좌납부 가능)받아 시중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고지의 발부 후 독촉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기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등)이 압류됨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시분) 부과 반송내역 1부.

화순군 공고 제 2021 - 779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및 수취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3.

화 순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5. 3. ~ 2021. 5. 18. (15일간)
2. 공고장소 : 화순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보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붙임 참조
	대장상 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해체·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 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4. 문의처: 화순군 행복민원과 건축민원팀 (☎061-379-3474)

화순군 공고 제2021 - 782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사전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인정에 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06.

화 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도로)
   ○ 명 칭 :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화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소로2-44호선)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m)	폭원(m)	면적(㎡)	비고
소로2-44호선	197	10	2,54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순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7. 열람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379-3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1	화순읍 교리	193-2	도	288	15	화순군 화순읍 교리 293	화순군향교 재단			
2	화순읍 교리	193-1	대	210	17	화순군 화순읍 교리 293	화순군향교 재단			
3	화순읍 교리	196-2	도	202	117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박인경			
4	화순읍 교리	193-8	도	68	2	화 순 군				
5	화순읍 교리	196-1	대	80	80	화 순 군				
6	화순읍 교리	145-8	도	276	276	화 순 군				
7	화순읍 교리	95-3	도	3,401	79	화 순 군				
8	화순읍 교리	106-1	도	40	40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32	김명선			
9	화순읍 교리	107-2	도	278	239	화순군 화순읍 훈리 37	박반석			
10	화순읍 교리	358	구	1,289	249	농 수 산 부				
11	화순읍 교리	372	도	8,829	126	건 설 부				
12	화순읍 교리	154	대	407	30	광주 서구 화정동 806-2	박광일			
13	화순읍 교리	153	대	407	14	광주 서구 화정동 806-2	박광일			
14	화순읍 교리	358	구	1,289	249	농 수 산 부				
15	화순읍 교리	109-2	도	228	166	화순군화순읍만연리	윤종은			
16	화순읍 교리	150-1	대	261	58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70, 101동1002호	이채언			
17	화순읍 교리	150-2	도	3	3	화순군 화순읍 교리	조홍선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18	화순읍 교리	149-1	대	83	41	화순군 화순읍 교리70-1 공간아파트 102-205	김영봉			
19	화순읍 교리	149-2	도	11	11					
20	화순읍 교리	368	도	141	118	기획재정부				
21	화순읍 교리	127-2	도	337	258	기획재정부				
22	화순읍 교리	133	대	251	43	화순군 화순읍 교리133	박태근			
23	화순읍 교리	127-3	대	10	10	화순군 화순읍 교리 293	화순군향교			
24	화순읍 교리	367	도	69	69	건 설 부				
25	화순읍 교리	130	차	710	102	화 순 군				
26	화순읍 교리	193-1	대	210	61	화순군 화순읍 293	화순군향교			
27	화순읍 교리	195	대	30	6	화순군 화순읍 293	화순군향교			
28	화순읍 교리	156	대	113	9	화순군 화순읍 교리 156	조경현			
29	화순읍 교리	151	대	386	8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31-8	윤한호외1인			
30	화순읍 교리	132-2	대	311	8	화순군 화순읍 교리 132-2	정귀복외1인			

화순군 공고 제 2021 - 7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방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4.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5. 4. ~ 2021. 5. 19.(15일간)
3. 위반내용: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29조, 제34조 등
3. 송달내역: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가. 대상자는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발급 받아 원상복구 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며, 원상복구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061-379-3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공고 제2021-788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업무 추진 및 민원 불편사항 등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 시기 조정(제6조의2)

- 신청 시기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만료일인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삭제

나. 별표 개정(“세부지원 기준 등”)

○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결과 “기숙시설 미이용 전입 학생에 대한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 재검토” 권고함에 따라 지원 기준 개정

☞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생이 전입한 경우" 포함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6.(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dy3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61-379-3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서식>

붙 임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조례 제 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으로 한다.

별표 중 구분의 “전입 지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순군에 전입신고가 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세부지원 기준 등(제6조 관련)

구분	사 업 명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비고
전입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내용 : 전입자 1인 25만원 상당(3회 분할) - 1차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5만원 - 2차 : " 18개월 경과 후 10만원 - 3차 : " 36개월 경과 후 10만원	화 순 사 랑 상품권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도립전남학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전입학생 1인 100만원 상당(5회 분할) - 1차 : 전입신고일로부터 10개월 경과 후 20만원 - 2차 : " 20개월 경과 후 20만원 - 3차 : " 30개월 경과 후 20만원 - 4차 : " 40개월 경과 후 20만원 - 5차 : " 50개월 경과 후 20만원	화 순 사 랑 상품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군수가 별도로 정한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화순군 공고 제2021 - 793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추가 명시(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명시

나. 약칭을 사용하는 법령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28조)

- 「지방재정법」 약칭 않고 명칭 그대로 사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약칭

다.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라.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변경)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 제출 사항 →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할 때

· (변경)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신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신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마.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3조) 법 제32조의2제4항 → 법 제7조제2항

-(안 제27조) 법 제32조의9제1항 → 법 제21조제1항

법 제32조의9제3항 → 법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u>2021. 5. 26.(20일간)까지</u> 화순군수(참

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k9518@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감사실 예산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061-379-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조례안

화순군조례 제 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를 “관리 등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을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화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 등에 ---------- ---------- ----------.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제17조----------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생 략) ④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로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법 제21조제3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화순군 공고 제2021 - 794호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제8조)

- 기능 :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 구성

·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과장으로 함.

·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실·과·소장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6.(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hkr@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3) 팩스 : 061-379-381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061-379-37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실·과·소장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실·과·소장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공고 제2021 - 79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1-20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6.

화 순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1-20호선)개설공사

나. 위　　치: 화순읍 교리 302-5번지 지내

다. 사 업 량: 도로개설 L= 204m, B= 10.0m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마.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화순군수,(주)씨에스건설 대표이사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내용 참조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다.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5일간

라. 열람장소: 화순군청 도시과 도심개발팀(☏061-379-3823)

마. 열람방법: 보상계획 공고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가. 보상시기: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급(계좌입금)으로 보상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현금보상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순군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 보상금 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5. 기타사항

가.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

통보 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 도심개발팀(☏ 061-379-3823)으로 문의 바랍니다.

6.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실거주지)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계					215	212			
1	화순읍 교리	70-8	70-12	답	74	74	㈜공간 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2	화순읍 교리	70-7	70-7	답	141	138	㈜공간 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3	